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20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유○○
피 고	1. ○○시 ○○○○구청장
	2. ○○시 ○○○○구청장
	3. ○○시 ○○구청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 ○○시 ○○○○구청장이 2022. 6. 9.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66,109,7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55,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2. 피고 ○○시 ○○○○구청장이 2022. 6. 8.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761,3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65,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시 ○○구청장이 2022. 6. 9.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224,948,7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9,243,94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4. 26.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다. E과 C은 2011. 3. 29. 계약일 기준 C의 자산과 부채를 E이 인수하기로 하는 '법인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 C("갑") 양수인 : E("을") 제1조(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 양·수도되는 "갑" 법인의 자산과 부채(별지첨부)는 기준일 현재 "갑"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자산과 부채로 하되 ① "갑"이 제시한 2011. 3. 29. 현재의 임차보증금 60,000,000원과 관련된 권리와 임차료 지급에 대한 의무는 양·수도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한다.
② "갑"이 제시한 2011. 3. 29. 현재의 미 지급금 113,007,355원은 양·수도대상 부채에서 제외하고 "갑"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제2조(양수도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의 확정)
① 양·수도 자산가액은 기준일 현재의 "갑" 법인에 귀속되는 유·무형의 자산과 사업권 및 인·허가권을 포함(단 제1조 ①항은 제외)하되 그 금액을 금사십이억원(4,200,000,000원)으로 정한다.
② 양·수도되는 부채의 가액은 기준일 현재의 은행부채를 포함하여 금삼십칠억원(3,700,000,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승계한다.
제4조(양·수도 대금과 승계채무의 지급)
① "을"은 본계약이 성립됨을 담보하는 뜻으로 금오억원(500,000,000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갑"에게 2011. 3. 29. 지불하되 2011. 3. 31.까지 "갑"이 주주 전원에 대한 주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수도법인과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 및 양·수도 법인의 인감, 등기임원 사임에 필요한 서류, 법인양도를 결의한 주주총회 회의록, 기타 "을"이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음과 동시 주권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으로 대체키로 한다.
③ 위①항의 금액은 "을"은 "갑"의 대표이사인 F에게 지불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갑"과 F의 연대책임으로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다.
제7조(양·수도 형식)
① 양·수도 형식은 본 계약과 관계없이 양수도 법인이 발행한 주권(액면가 10,000원) 30,000주(주주 6명)를 양도하는 주권 매매형식으로 한다.
② 주권의 매수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주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전후 C 주식은 G이 3,000주, H이 1,500주, I가 6,000주, F가 16,500주, J가 1,500주, K가 1,500주를 가지고 있었다. 위 주주들 명의의 C 주식은 2011. 4.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A가 지정한 원고 B, L[1], M[2], N[3]에게 이전되었고 그 이후의 주주 및 지분 변동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A의 동서
2) 원고들의 며느리
3) E의 직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주주	2011. 4. 1.		2012		2015		2020. 1. 2.	
원고 B	8,000	26,67%	8,000	26.67%	11,000	36.67%	11,000	36.67%
L	7,500	25.00%	-		-		-	
M	3,000	10.00%	3,000	10.00%	-		-	
F	8,500	28.33%	7,600	25.33%	7,600	25.33%	-	
N	3,000	10.00%	3,900	13.00%	3,900	13.00%	-	
O			7,500	25.00%	7,500	25.00%	-	
원고 A							19,000	63.33%
합계	30,000	100%	30,000	100%	30,000	100%	30,000	100%

마. 원고 A는 2020. 1. 2. F, O, N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19,000주(= F 7,600주 + O 7,500주 + N 3,900주)의 명의를 이전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 A가 C 주식 19,0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원고 B이 보유하던 11,000주(36.67%)와 원고 A의 주식 19,000주(63.33%)를 합쳐 원고들이 C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종전 과점주주의 최대지분 합계 61.67%[= 원고 B 명의 주식(36.67%) + O 명의 주식 (25.00%)]보다 38.33%[= F 명의 주식(25.33%) + N 명의 주식(13.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원)

처분청	부과일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시 ○○구청장	2022. 6. 9.	7,993,004,171	224,948,700	19,243,940	244,192,640
○○시 ○○○○구청장	2022. 6. 9.	2,348,682,158	66,109,750	5,655,710	71,765,460
○○시 ○○○○구청장	2022. 6. 8.	27,049,392	761,350	65,120	826,470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세심판원은 2023. 3.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8,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 A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C 주식 3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식은 N 및 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2020. 1. 2.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롭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가 이전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 A와 N 및 F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계약서 등과 같이 원고 A가 N 및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A가 N 및 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3)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 7, 9 내지 15, 17, 19, 20,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F 및 N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 A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E이 C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 계약의 이행 방식은 C이 발행한 30,000주를 양수도대금 500,000,000원에 E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1. 3. 2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원고 A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8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E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30,000,000원 및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90,000,000원이 각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액 합계 500,000,000원은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500,000,000원 중 E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20,000,000원은 원고 A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E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280,000,000원은 원고 A 소유의 자금으로, 원고 A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수도 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반면 N이 자신 명의로 3,900주를 취득하며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 N은 2009. 7. 10.부터 2011. 3. 31.까지는 E에서, 2011. 4. 1.부터 2014. 9. 1.까지는 원고 A가 소유·지배하는 S에서, 2018. 1. 15.부터는 다시 E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서, N 스스로가 C의 주주로서 권리를 보유·행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C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O는 2012년경 C의 주식 7,500주에 대한 명의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년경 B이 보유하던 11,000주(36.67%)와 O가 보유하던 7,500주(25.00%)를 합한 61.67%를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로 보고 있었고, 원고 A가 O의 주식을 합하여 총 19,000주의 C 주식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O의 지분을 제외하고 F 및 N의 지분 만큼인 38.33%만이 증가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O가 보유한 주식은 이미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O는 N과 동일하게 E 소속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다르게 평가하기 어렵다.

4) 원고 A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 7. 11.부터 C의 현금출납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보에 사장으로서 결재하는 등 C의 명의상 주주가 아님에도 실질적인 사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 F 및 N이 C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 권한과 지위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5) N 및 F가 2020. 1. 2. 원고 A에게 주식을 매도, 증여하였다는 등 다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A가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 변경이 일어날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6) 원고 A는 N, O, F 명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자신의 계산으로 납부하였고, N, O, F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백○○

판사 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